

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

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(예비)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「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」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8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 모집개요

- **사업목적** :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**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**
- **지원대상** : 비대면 분야 **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(창업 후 7년 이내)**
- **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** : 400개사 내외

< 비대면 분야별 지원규모 >

| 5대 핵심분야 | 12개 세부 분야 | 지원규모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의료 | ①비대면 의료, ②의료기기 | 세부 분야별 28개 내외 |
| ② 교육 | ③온라인 교육, ④에듀테크 시스템 | |
| ③ 생활·소비 | ⑤온라인 농·식품, ⑥물류, ⑦스마트도시, ⑧해운·수산, | |
| | ⑨친환경 | |
| ④ 콘텐츠 | ⑩지역·융합 미디어, ⑪비대면 스포츠 | |
| ⑤ 기반기술 | ⑫AI, 보안기술(블록체인) 등 | |
| 유레카 | 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| 400개사 |
| 합 계 | | |

* 세부 분야별 신청·접수현황에 따라 평균 신청규모를 상회하는 세부 분야는 35개사 내외까지 선정될 수 있음

2 신청·접수

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 등 관계법령, 『창업 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□ **신청·접수기간** : 2021. 4. 8.(목) ~ 27.(화), 18:00까지

※ 유의사항

- 1)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** ("제출완료"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)
- 2) '**제출완료**' 버튼을 클릭해야 **접수 신청이 완료됨**
- 3) **접수마감일 18: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**, 18: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(1단계 이상 저장 과제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:00까지 작성항목 수정,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. 마감시간 18: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
□ 제출서류

- **사업계획서(중빙서류 포함)** [별첨 1] 양식

*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**공고문에 첨부된 양식**을 사용하여야 하며,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**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**

□ 신청방법

- **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 누리집**을 통해 **온라인 신청**

* 사업 신청 시 참여를 희망하는 **1개의 세부분야와 주관기관**을 선택하여 **신청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(21.4.27.(화), 18:00) 이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**

- 온라인 신청절차

| 구분 |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신청절차 | 회원가입 |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| 파일 업로드 | 접수 확인 및 완료 |
| 필수사항 | - | 비대면 세부 분야 및 주관기관 확인 | 사업계획서 업로드 (용량제한 30MB) | - |

*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[별첨 2] 창업기업 온라인 '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
□ 추진 절차 및 일정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 : 아래 '①' 또는 '②' 에 해당 되는 자(기업)

- ① (예비창업자) 사업공고일까지('21.4.8.) 창업경험(업종 무관)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('21.4.8.)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-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
 -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, 부도·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

* 이종·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함 (세세분류 일치 시 : 동종업종으로 판단 / 세세분류 불일치 시 : 이종업종으로 판단)
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-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- 자료실 - 최신 개정 -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

- ② (7년 이내 창업기업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**창업 7년 이내인 자**

< 신청자격 세부조건 >

☞ 신청가능 업력 : 2014년 4월 8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('14.4.8.~)

-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*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. **[붙임1]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**
- 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 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□ 신청(지원) 제외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- 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('21.4.27)까지 채무부채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(기업)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- * 단,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('21.4.27)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(기업)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☞ 중소기업부(舊 중기청) 창업사업화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,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※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- *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(지원) 불가
- * 중소기업부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·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(지원) 가능
- *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

- ☞ 중소벤처기업부 '20년 K-유니콘 프로젝트(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), '18년~'20년 포스트팁스(POST-TIPS)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(기업)
- ☞ 중앙정부,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사업화 기 지원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(동일 창업아이템)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(기업)
- 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- ☞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 - * [붙임2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☞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(기업)
- ☞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
- ☞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- ☞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☞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4 지원내용

- ☐ 지원기간 : 9개월 ('21.6월 ~ '22.2월 예정)
- ☐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
 - 사업화자금 :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

| 구분 | 세부사항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사업화 자금 | <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> | |
| | 사업화 자금 | 지원기간 |
| | 최대 1.5억원 이내 | 협약 후 9개월 이내 |
| *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| | |

| <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>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총사업비 | 정부지원금 | 창업기업 대응자금 | |
| | | 현금 | 현물 |
| 215백만원 | 150백만원 | 22백만원 | 43백만원 |
| 100% | 총 사업비의 70% 이하 | 총 사업비의 10% 이상 | 총 사업비의 20% 이하 |
| 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** 예비창업자는 창업기업 대응자금 없음(공고일('21.4.8.) 기준 판단 예정) | | | |
| < 사업비목 및 정의 > | | | |
| 비목 | 비목 정의 | | |
| 재료비 | 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| | |
| 외주용역비 | 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| | |
| 기계장치 구입비 | 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| | |
|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| 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 | | |
| 인건비 | 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 지급 불가) | | |
| 지급수수료 | 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 | | |
| 여비 | •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| | |
| 교육훈련비 | •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| | |
| 광고선전비 | 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| | |

- **특화프로그램** :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,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

| 구분 | 세부사항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특화 프로그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지원 * (주관기관 역할) 협약기간 내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 관리,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분야별 주관기관 및 주요 지원내용(안) ></p> | | | | |
| | 분야 | 세부분야** | 소관 협업부처 | 주관기관 | 주요 프로그램 |
| | 의료 | 비대면의료 | 보건복지부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임상·인허가 컨설팅,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|
| | | 의료기기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| 의료기기 제품화 실무교육, 제품·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 |
| | 교육 | 온라인교육 | 교육부 | 한국교육학술정보원 | 테스트베드 제공, 에듀테크 소프트랩 연계 제품설치 지원 등 |
| | | 에듀테크 시스템 | 산업통상자원부 | (사)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| 투자자와 기술 전문인력 매칭,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 |
| | 생활·소비 | 온라인 농·식품 | 농림축산식품부 | 농업기술실용화재단 | 기술가치평가, 판로지원,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|
| | | 물류 | 국토교통부 | 한국통합물류협회 | 기술·인증 컨설팅, 국제물류 및 홍보관 참여지원, 물류교육 등 |
| | | 스마트도시 | 국토교통부 | 스마트도시협회 | 전시회 참가지원, 테스트베드 연계 지원 등 |
| | | 해운·수산 | 해양수산부 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| 해양·수산 교육, 전문가 매칭, R&D고도화 지원 등 |
| | 콘텐츠 | 친환경 | 환경부 | 한국환경산업협회 | 환경분야 정보제공, 판로지원, 환경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등 |
| | | 지역·융합 미디어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| 영상제작 교육, 스마트 미디어 네트워킹 지원 등 |
| | 기반 기술 | 비대면 스포츠 | 문화체육관광부 |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| 고객진단 컨설팅, 기술 멘토링, VC포럼 모의R 지원 등 |
| | | AI, 보안기술 등 | 특허청 | 한국특허정보원 | 클라우드, IP데이터 지원, 보안인증기술 컨설팅, 테스트베드 지원 등 |
| | 유레카 | 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| 중소벤처기업부 | 인천테크노파크 | 경영컨설팅, 투자유치, 홍보 지원 등 |
| * 주요프로그램 세부내용은 [별첨 3]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조 | | | | | |

** 1개 세부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,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

5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절차 및 기준

- (평가절차)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선정

< 창업기업 선정 절차(안) >



자격검토는 상시 진행(창업진흥원·주관기관)하며,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* 사업자 업력서류 등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안내 예정

- (평가기준) 제품·서비스의 개발 동기, 개발방안, 성장전략, 기업 구성 및 역량, 비대면 분야 유망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

< 창업기업 평가항목 >

| 세부평가 | 배점 | | 평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|
| | 서류 | 발표 | |
| 1. 문제인식 (Problem) | 30 | 20 | 1-1. 제품·서비스의 개발동기 1-2. 제품·서비스의 목적(필요성) |
| 2. 실현가능성 (Solution) | 30 | 35 | 2-1. 제품·서비스의 개발방안 2-2.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|
| 3. 성장전략 (Scale-up) | 20 | 25 | 3-1.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-2.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|
| 4. 기업 구성 (Team) | 10 | 10 | 4-1. 대표자·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-2.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|
| 5. 비대면 분야별 유망성 | - | 10 | 5-1. 사업방식 등 비대면 여부(O,X) 5-2. 사업계획의 해당 비대면 시장에서의 유망성 |

*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또는 '5-1. 사업방식 등 비대면 여부'를 판단하였을 때 'X' 인 경우에는 탈락(서류평가 위원회에서 비대면 여부를 심의할 예정)

- ①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(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 선정

- ②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개발방안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발표평가(PT 양식 등)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며,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함
 - **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으며 사업장 및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**최종선정** :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

6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(21.6월 예정) 내에 창업기업 대응 자금(현금)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 - * 공고일(21.4.8.) 기준 예비창업자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예비창업자일 경우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(사업자 등록)을 이행하여야 함*
 - *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
-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(www.startbiz.go.kr)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(예비)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·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,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*
 - * 전담/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

7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(기준), 기타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 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가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써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- 동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(예비창업자 포함)가 하여야 하며, K-Startup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음

* 'k-Startup 홈페이지'(https://www.k-startup.go.kr/) 상의 동 사업 신청자, 해당 기업의 대표자,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

- '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*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(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)

* (창업지원사업)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
**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(지원)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
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*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
-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한글(hwp) 및 워드(Word)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*

*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,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'발표평가' 및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'현장평가'의 전체 과정을 동 사업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

-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, 1회에 한함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①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'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-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*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,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관리 운영됨

- 또한, 중간(수시)점검 결과에 따라 '중단 또는 회수'될 수 있음

- 협약기간 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8 기타 참고사항

□ 신청·접수 시스템 문의처

| 구분 | 문의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신청·접수시스템 (K-Startup 홈페이지) 관련 문의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| 국번 없이 1357 |

□ 세부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

| 분야 | 세부 분야 | 소관 협업부처 | 주관기관 | 연락처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료 | 비대면의료 | 복지부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02-2095-1742, 1734 |
| | 의료기기 | 식약처 |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| 02-860-4411, 4415 |
| 교육 | 온라인교육 | 교육부 | 한국교육학술정보원 | 053-714-0381, 0306, 0316, 0402 |
| | 에듀테크 시스템 | 산업부 | (사)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| 02-557-7601(301), 02-557-7601(302) |
| 생활·소비 | 온라인 농·식품 | 농식품부 | 농업기술실용화재단 | 063-919-1410, 1413 |
| | 물류 | 국토부 | 한국통합물류협회 | 070-7090-6649, 6656 |
| | 스마트도시 | 국토부 | 스마트도시협회 | 02-3667-3114 |
| | 해운·수산 | 해수부 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| 02-3460-4055, 4033 |
| | 친환경 | 환경부 | 한국환경산업협회 | 02-2088-5354, 5359 |
| 콘텐츠 | 지역·융합 미디어 | 과기정통부 |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| 061-350-1397, 1426 |
| | 비대면 스포츠 | 문체부 |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| 070-4209-1555, 070-7721-7068 |
| 기반기술 | 인공지능, 보안기술 등 | 특허청 | 한국특허정보원 | 02-6915-1426, 1473 |
| 유레카 | 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| 중기부 | 인천테크노파크 | 032-228-1204, 1206 |

※ '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영상은 '21.4.13.(화) 16시부터 Youtube '창업진흥원' 채널을 통해 신청·접수기간 종료 시 까지 공개합니다.

【붙임 1】 창업여부 기준표

| 창업여부 기준표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기업 구분 | 상세 구분 | | 창업여부 | |
| 개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| | 창업 기본요건 | |
| | 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 | 동종유지 | 창업아님 | |
| | | 이종 | 창업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- | | 창업아님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- |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초과 | 창업 |
| 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 | | | 창업아님 창업 창업아님 | |
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| - | | 창업 | |
| 법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| | 창업 기본요건 | |
| | 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 | 동종유지 | 창업아님 | |
| | |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| 창업 창업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- |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초과 | 창업 |
| | | | 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 | 창업아님 창업 창업아님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이종창업 | - |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| 창업아님 창업 |
| | 자회사 여부 |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이면서 최대주주 | | 창업아님 |
| | 조직변경 | 동종유지 이종 | | 창업아님 창업 |
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| - | | 창업 | |

*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* 업종은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하며, 세세분류(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업종"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
【붙임 2】 지원제외 대상 업종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| No | 대상 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일반유흥주점업 | 56211 |
| 2 | 무도유흥주점업 | 56212 |
| 3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91249 |
| 4 |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|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